#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0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 송재봉·서왕진·이용선

김남근 • 전진숙 • 이용우

박정현 • 이광희 • 차규근

박홍근 • 박주민 • 김우영

이수진 · 차지호 · 이연희

남인순・김 윤・이강일

천준호 · 김동아 · 허성무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 ·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법률 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00인"을 "5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2.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그 외의 비영리민간단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	제2조(정의)
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	
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	
춘 단체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시 구성원수가 <u>100인</u> 이상	4 <u>50명</u>
일 것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	제4조(등록) ①
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	
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	<u>다음 각 호의 자에게</u>
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u>자는</u>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	
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	
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u>중앙</u>	
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나	

<u>특례시의 장은</u> 그 등록을 수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1.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영리민 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 쳐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소 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단체 2.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 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 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그 외의 비영리 민간단체

② (현행과 같음)